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성흠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493

발 의 년 월 일 : 2026년 02월 09일
발 의 자 : 성흠제 의원(1명)
찬 성 자 : 김동욱, 김성준, 김원태, 김인제, 박칠성, 봉양순, 송도호, 유정희, 임규호, 최민규, 홍국표 의원(11명)

1. 제안이유

○ 최근 화재 · 정전 · 침수 등 디지털재난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,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.

○ 그러나 현행 조례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.

○ 이에 디지털재난에 대비한 정보시스템 관리체계의 구축 · 운영 의무와 그 내용을 명문화하여, 서울시 행정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화재, 정전, 침수 등 디지털재난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 · 운영하도록 규정함(안 제7조제4항).

나.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에 데이터 백업 및 복구, 단계별 대응 · 복구 절차, 연속적 운영을 위한 보호 · 대응 체계 등 필수사항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7조제5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, 「정보통신기반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 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화재, 정전, 침수 등 디지털재난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관리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의 백업 및 복구체계
2.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및 복구 절차
3. 재난 발생 시 정보시스템의 연속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호·대응 체계
4. 그 밖에 디지털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디지털재난 관리) ① ~ ③ (생 략) <신 설> <신 설>	제7조(디지털재난 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시장은 화재, 정전, 침수 등 디지털재난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 ⑤ 제4항에 따른 관리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의 백업 및 복구체계 2.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및 복구 절차 3. 재난 발생 시 정보시스템의 연속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호·대응 체계 4. 그 밖에 디지털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연번	조·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1	제7조 (디지털재난관리)	△	**〔기술적 추계 곤란〕** 디지털재난 대비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 시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시스템 구축 등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**관련부서**(서울시 정보시스템과) **확인 결과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예산 편성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현시점에서 기술적인 추계가 곤란함**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
○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한 정보시스템 관리체계의 구축·운영 의무와 그 내용을 명문화하여, 서울시 행정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

○ 신설된 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은 화재, 정전, 침수 등 디지털재난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하는 것으로,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시스템 구축 등에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**관련부서**(서울시 정보시스템과) **확인 결과 현재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이와 관련한 예산 편성, 구축·운영 방법, 대응 및 복구 체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현시점에서 기술적인 추계가 곤란함**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	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계분석관	권 봉 수

☏ 02-2180-7952
e-mail : shibedoge0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